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1-09

## 서울행정법원

### 제 12 부

### 판 결

사 건	2002구합2524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참여연대	
피 고	국가정보원장	
변 론 종 결	2003. 7. 10.	
판 결 선 고	2003. 8.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2. 5. 10. 원고에게 한 사단법인 양우공제회의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각 결산내역서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가정보원 전·현직 직원들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양우공제회(이하 ‘양우공제회’라 한다)가 2001년 12월경 원주시 소재 파크밸리 골프장을 인수한 것으로 보도되자, 시민단체인 원고는 인수자금의 출처와 그 적법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2002. 4. 8. 피고에게 양우공제회의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각 결산내역서(이하 ‘이 사건 결산내역서’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5. 10. 이 사건 결산내역서는 양우공제회가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문서인데, 양우공제회로서는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결산내역서의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는 같은 법에서의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 실체가 존재하는 것에 한정된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청구인은 당해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문서제목, 작성일자, 문서번호나 관련 내용을 제시하여야 하고,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직접증거에 의하여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실체가 존재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양우공제회의 감독기관이므로 이 사건 결산내역서를 관리하고 있



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가정보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원 내의 부서 및 산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정된 국가정보원의 감사업무규정(2000. 5. 4. 제1116호, 을2) 제5조 제2항은 “감사는 감사요원이 감사대상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 서류 확인만으로 감사의 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양우공제회의 감독기관이라 하여 반드시 이 사건 결산내역서를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결산내역서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김영태      \_\_\_\_\_

   판사      이범균      \_\_\_\_\_

   판사      조윤희      \_\_\_\_\_